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명의 차용을 통한 소비쿠폰 등의 우회수령 금지〉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84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오세회의원 등 17인
- (2) 제 안 일 : 2026. 1. 23.
- (3) 회 부 일 : 2026. 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상품권은 정부의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처가 제한된 정책수단임.

그런데 일부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매장임차인 명의를 활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며 소비쿠폰 결제를 사실상 우회적으로 흡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소비쿠폰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매장임차인의 독자적 거래 지위를 침해하며, 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함.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명의·상호 사용행위 및 소비쿠폰 우회수령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체계와 연동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행위를 통하여 소비쿠폰 등을 우회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 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 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 료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 제) ----- ----- ----- ----- ----- ----- ----- <u>제11조, 제11조의2,</u> <u>제12조부터 제14조까지</u> ----- ----- ----- -----.
1.·2.(생략)	1.·2.(현행과 같음)
<신설>	<u>제11조의2(매장임차인의 명의 사 용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의 명의 또는 상호 를 사용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하여</u>

현행	개정안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법	<u>소비자와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의 행위를 통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소비촉진 목적의 소비쿠폰,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을 우회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에 관하여는 매장임차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로 본다.</u> 제32조(시정명령) ----- ----- -----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 ----- ----- ----- ----- ----- ----- -----

현행	개정안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u>제12조부터 제14조까지</u>,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7조, 제10조, <u>제12조</u>, 제18조를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납품업자등에게	----- ----- ----- -----. 제35조(과징금) ① ----- ----- ----- -----<u>제11</u> <u>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u>- -----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1</u> <u>1조의2, 제12조</u>----- ----- -----

현행	개정안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2025년 7월 정부는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매장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였음.

○ 그런데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되는 일부 매장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인근 가게 또는 임차 매장의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소비쿠폰을 사용하게 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음.¹⁾

□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통하여 소비쿠폰, 상품권 등 소비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우회적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대형 식자재마트, 카드 단말기 바꿔치기로 소비쿠폰 '꼼수' 영업』 (머니투데이, 2025. 8. 3.)

○ 개정안에 따를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명의 차용 등을 통한 소비쿠폰 등의 부정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정책 취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서 규율하려는 행위는 소비촉진 정책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의 우회 수령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 소관 법률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²⁾에 따라 제재할 수 있고,

- 소비쿠폰, 상품권 등을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거나 개인 간 거래 등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3. 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9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을 통해 현금화하는 등의 각종 부정유통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⁵⁾에서 규율하고 있음.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목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또한,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명의 차용 및 우회 수령 등의 행위를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관계없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만 적용되는 점⁶⁾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발행하는 소비쿠폰 및 상품권 등을 우회수령하는 행위는 각 소관 법률 등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율할 경우 불필요한 입증요건이 추가되므로 집행의 실효성도 저해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2. 제2조의2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다수의 매장임차인 중 일부 매장임차인으로부터는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매장임차인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 간의 거래